

2002. 11. 13(水)

第11回 韓經研 포럼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주제 · 연사 : 회계 투명성의 국제적 요구수준과 우리의 대응
(김경호 박사 · 한국회계연구원 상임위원)

회계투명성의 국제적 요구와 우리의 대응

2002. 11. 13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김 경 호

I. 회계투명성의 국제적 요구

1. 회계투명성, 분식회계의 개념

- 회계투명성 개념은 IMF 위기 이후 경영투명성 개념과 함께 사용됨
- 회계투명성은 투명한(transparent) 회계를 의미하며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인 신뢰성(reliability)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본질은 다름
- 분식회계는 투명성을 해치는 다양한 회계수단으로 기업정보의 왜곡 초래

2. 회계투명성 저해의 원인

- 경영자의 회계분식 동기가 존재
 - 회계전략은 장기적이어야 하나 경영자의 안목은 단기적, 자본시장에서의 정보불균형
 - 분식회계의 이익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훨씬 초과함
-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전통적으로 좋은 회계에 대한 진실한 수요가 없으며 진정한 가치평가에 무관심
 - 회계정보를 무시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관행화 됨
 - 부실회계에 대한 규제기관과 자본시장의 제재 미흡

3. 회계투명성 요구 계기: 국내외 분식회계 사례와 파장

o 국내의 분식회계 사례: IMF 위기 전후

- 한보철강(1997): 6,920억원의 순자산 과대계상
- 동아건설(1998): 7,140억원의 순자산 과대계상
- 대우그룹 12개 계열사(2000): 22조 9천억원의 순자산 과대계상

o 결과

- IMF 경제위기 초래
- 기업도산, 국가신뢰도 추락(코리아 디스카운트)

o 국외의 분식회계 사례

- Barings Bank 사건(1995, 영국/싱가폴): 선물딜러의 10억 파운드 손실 은폐, 결국 도산
- Waste Management(1998, 미국): 5년간 140억불 손익과대 인정하고 수정재무제표 작성
- Enron 사건(2001, 미국): 다양한 분식회계수단 사용, 4년간 6억불 이상의 손익과대계상
- 월드컴(2002, 미국): 30억불 이상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

o 결과

- 기업도산, 증시의 폭락과 침체
- 회계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 문제제기

II.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동향

1. 투명성/불투명성 지수 발표

o PWC 불투명성지수(opacity index): 2001년 1월

- 기업, 은행대출담당자, 애널리스트, 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 평가모형: $O_i = 1/5 * [C_i + L_i + E_i + A_i + R_i]$,

O : 불투명성 지수, C : 부패관행 지수, L : 법률적 불투명성, E : 경제적/정책적 불투명성,
A : 회계/기업지배구조 불투명성, R : 규제의 불투명성

• <표1>결과 : PWC 불투명지수

국가	C	L	E	A	R	O-Factor	세율증가(%)	불투명성 리스크 프리미엄	해외직접투자 상실액(백만달러)
싱가폴	13	32	42	38	23	29	(benchmark)	0	0
칠레	30	32	52	28	36	36	5	3	0
미국	25	37	42	25	48	36	19	0	0
영국	15	40	53	45	38	38	7	63	0
중간 국가 생략(5 ~ 13위)									
페루	46	58	65	61	57	58	23	563	2,363
콜롬비아	48	66	77	55	55	60	25	632	4,593
일본	22	72	72	81	53	60	25	629	8,662
남아프리카	45	53	68	82	50	60	24	612	2,632
아르헨티나	56	63	68	49	67	61	25	639	18,732
브라질	53	59	68	63	62	61	25	645	40,261
대만	45	70	71	56	61	61	25	640	2,560
파키스탄	48	66	81	62	54	62	26	674	1,094
중간 국가 생략(22 ~ 25위)									
태국	55	65	70	78	66	67	30	801	10,224
에쿠아도르	60	72	78	68	62	68	31	826	1,295
케냐	60	72	78	72	63	69	32	848	28
체코	57	97	62	77	62	71	33	899	5,964
루마니아	61	68	77	78	73	71	34	915	2,874
한국	48	79	76	90	73	73	35	967	12,347
터어키	51	72	87	80	81	74	36	982	1,822
인도네시아	70	86	82	68	69	75	37	1,010	1,268
러시아	78	84	90	81	84	84	43	1,225	9,802
중국	62	100	87	86	100	87	46	1,316	n.a

o S&P의 공시투명성 지수 (Transparency and Disclosure survey): 2001년 8월

-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하여 공시의 투명성을 평가
- 아시아와 남미 기업을 1차로 조사
- <표2>결과 : S&P지수에 의한 국가별 공시투명성

국가	조사대상 기업수	전체등급평균	소유구조 및 IR	재무투명성 및 정보공시	경영진과 경영절차
호주	26	6.96	6.00	7.15	7.31
싱가폴	11	6.91	6.82	7.91	6.54
일본	150	6.08	6.98	7.63	3.67
뉴질랜드	1	6.00	5.00	7.00	6.00
홍콩	19	5.42	4.26	6.95	4.58
태국	27	5.19	5.56	6.11	4.33
한국	47	5.04	4.83	6.38	4.21
스리랑카	1	5.00	9.00	5.00	4.00
말레이시아	51	4.98	6.06	6.18	3.63
인도	42	4.45	4.29	5.74	3.40
인도네시아	13	4.23	4.38	6.31	2.15
파키스탄	10	4.20	4.60	5.90	2.30
브라질	30	3.67	3.37	6.00	1.83
칠레	21	3.62	3.33	5.76	1.86
베네주엘라	2	3.55	2.55	5.00	3.00
러시아	42	3.45	3.25	4.05	2.93
아르헨티나	9	3.44	2.22	6.22	1.89
필리핀	9	3.33	2.67	5.78	1.67
멕시코	18	3.11	1.94	5.39	1.67
페루	8	2.88	2.25	5.50	1.13
대만	36	2.44	1.69	4.75	1.50
콜롬비아	1	2.00	2.00	4.00	1.00
전체	574	4.82	4.90	6.31	3.40

2. 회계기준의 국제적 수렴화(Convergence) 추구

o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활동

- 1973년에 IASC로 설립
- 100개국 이상의 가맹국을 가지며 global accounting standards의 제정을 추구
- 2001년 IASC를 full-time 조직인 IASB로 개편하고 IFRS(종전 IAS) 발표
- 최근활동
 - 1995. 7 IOSCO-IASC Agreement
 - 1996. 4 SEC의 IASC 지지성명 발표
 - IOSCO core standards program(95 - 98)
 - IASC 미래보고서(Shaping IASC for the Future), 1998
 - 주요국, 특히 미국의 기준제정기구(FASB)와 협력관계 진행

o EU국가들의 국제회계기준 채택: 2005년부터

o 한·중·일 회계기준위원회의 IASB 준거 선언

o IASB와 FASB의 회계기준 차이 제거키로 합의: 2002년 9월

3. 회계감독기능의 강화

- 자율감리위주의 공인회계사 감리제도 개선 추구
- 증권감독기능 강화
- 미국의 사베인즈-옥슬리법안(Sarbanes-Oxley Act) 법

<표 3>사베인즈-옥슬리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회계감독기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가 선임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 · SEC로부터 인사와 예산상의 독립성을 유지 ·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및 처벌권과 회계규정 제정권 부여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문서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 · 문서 조작 및 파기시 현재 최고 5년 징역형에서 20년으로 연장 · 기업범죄 공소시효를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증권사기범은 최고 25년 징역형
회계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와 CFO는 회계/결산자료가 사실임을 인증 · 회계법인은 컨설팅업무를 비롯한 비회계업무의 겸업을 금지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비회계업무도 사전허가 필요 · 기업은 의무적으로 5년마다 회계법인을 교체

Ⅲ.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우리의 대응

1. 회계기준의 개선과 국제화

- 한국회계연구원의 설립(1999년 9월)과 활동
-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제정 접근방법
 - 투명성제고와 논리적 일관성을 위한 준거기준의 명확화
 - 국제회계기준을 주요 준거기준으로 채택, 정합성 제고
 - 급격한 수용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비용 최소화 차원에서 전략적인 접근
 - 회계기준의 구조개선
 - 기존 기업회계기준, 준칙, 해석의 구조를 기준서, 해석서, Q&A의 체제로 전환
 - 하나의 기준서가 해당 회계사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회계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회계연구원/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 현황
 - 토론서 제 1호 ~ 제 16호, 연구보고서 제 1호 ~ 제 12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 1호 ~ 제 10호, 지분법, 건설업 등 공개초안 5건
 - 제정된 기준서에 대한 전국 순회교육 실시(2002년 9 ~ 11월)

2. 회계감독, 공시 등 회계제도 개혁안 (2002년 11월, 회계제도개선 실무기획단)

① 이사회·최고경영진·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CEO·CFO의 인증(서약)을 의무화
-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담보제공시 이사회승인을 의무화
- 투명회계 확보를 위한 감시기능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항구적으로 법제화

② 회계관련 공시제도의 강화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 제출시한을 단축(사업연도말로부터 4개월 → 3개월) 하고, 분·반기보고서 제출시에도 연결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검토
- 사업보고서 본문에 공인회계사가 감사의견을 직접 기재·서명토록 하고, 합병재무제표 등 비정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의 검토 또는 감사를 의무화

③ 외부감사의 공정성 및 책임 강화

-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컨설팅업무와 감사업무간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큰 컨설팅업무의 수행을 금지하는 방안 검토
- 외부감사인의 책임강화를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 보존의무 및 벌칙을 법률로 규정

④ 회계감독기능의 효율성 제고

- 증선위의 회계감독기능과 전문성 강화

⑤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